

(제1-1호)

거래처별 자기자본의 10% 초과 신규부실대출 발생

(단위 : 백만원)

거래처	대출일자	부실대출 금액(A)	부실 발생일	자기자본 (B)	자기자본대비 부실대출 비율(%) (A/B)*100	비 고
(주)한국전자	19.12.20.	5,900	20.06.30.	45,551	12.95	

기재상의 주의

주)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여신 거래처별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(거래처별 신규 부실대출금액이 5억원이하인 경우 제외) 공시